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2020016 판결 [선급금보증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삼성물산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제일모직 주식회사)

2. 우미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5. 11. 27.

판결 선고 2016. 1. 15.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합56431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142,138,685원, 원고 우미건설 주식회사에 157,67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원고 제일모직회사 주식회사(이하 '원고 제일모직'이라 한다)' →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성물산'이라 한다)

) 제3면 제26행, 제4면 제4행, 제5면 제4 · 6 · 12 · 13행, 제6면 제3 · 15행, 제10면제17행, 제11면 제4 · 11 · 19행의 각 '원고 제일모직' → 원고 삼성물산

○ 제9면 제3행의 '(원고가 승인한 공동과 업체)' → (원고들이 승인한 공종과 업체)

) 제9면 제12행의 '원고가' → 원고들이

제12면 제11행부터 제21행까지

『 (6)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의 약관 제9조 제6호에서 '보증채권자와채무자 사이에 기성금을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임금채무, 자재대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로 지급하겠다는 약정, 채무자의 기성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사유로 선급금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 등으로 미정산 선급금에 충당되지 못해감소하지 못한 보증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비더씨건설에 지급하여야할 기성금에서 직접 하수급업체 및 노임채권자들에게 지급한 합계 329,795,053원은 '기성금을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임금채무, 자재대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미정산 선급금에 충당되지 못해 감소하지 못한 보증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직접 지급한 금액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다룬다.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어 소멸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소멸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 선급금 보증인의 보증책임 역시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1계약 해지 등으로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뒤에 보증채권자와 채무자가 사후 약정으로 선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채무자의 채권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을 선급금에서 공제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선급금 보증인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② 계약 해지 등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보증채권자와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방식대로 선급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그 돈을 제3자에 게 지급하여 선급금에서 공제되지 못하게 할 경우에도 선급금 보증인의 이익은 침해된다. 그런데 ③ 계약 해지 등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채권자와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방식대로 선급금을 정산한 뒤에 남은 기성금은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성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아니면 그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하여도 선급금 보증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의 약관 제9조 제6호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을 면책시키는 사유로 규정한 '보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기성금을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임금채무, 자재대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로 지급하겠다는 약정 등으로 미정산 선급금에 충당되지 못해 감소하지 못한 보증금'은 ① 계약 해지 등으로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후에 보증채권자와 채무자가 한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미정산 선급금에 충당되지 못해 감소하지 못한 보증금, 또는 ② 계약 해지 등으로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보증채권자와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방식대로 선급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그 돈을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선급금에서 공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정산 선급금에 충당되지 못해 감소하지 않은 보증금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과 비더씨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2013. 9. 9.

이전인 2013. 8. 30. 직불합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13. 9. 3.부터 2013. 9. 5. 사이에 비더씨건설의 하수급업체 및 노임채권자들에게 합계 329,795,053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원고들과 비더씨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이후 주계약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2조 제5항에 정한 선급금 정산식에 따라 선급금을 정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이전에 원고들이 기성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정산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더씨건설의 하수급업체 및 노임채권자들에게 합계 329,795,053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 약관 제9조 제6호의 면책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 약관 제9조 제6호를 위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 위 약관 조항은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증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보증계약자인 비더씨건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위 약관 조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비더씨건설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약관 조항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보증계약자인 비더씨건설에 대하여 위 약관조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약관조항은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피고가 2015. 12.23.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한 하급심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심연수, 판사 정총령